

1. 개정이유

사업주의 보험관계 신고 부담 경감 확대를 위해 성립·변동·소멸 신고의제 항목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험관계 적용 관련 신고 의제 제도 확대(안 제7조제5항·제8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3항)

사업주의 보험관계 신고 부담 경감 확대를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해 성립·변동·소멸이 확인된 경우 사업주가 신고한 것으로 갈음하는 신고의제 항목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고용노동부령 제 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에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 등록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9.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를 신고하여 수리된 경우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실행 신고 또는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⑧ 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보험관계 소멸신고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에 제3항에 따른 보험관계 소멸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사업자가 폐업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그 폐업일

2. 건설공사 또는 별목업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 공단에 사업의 기간을 신고한 경우 그 사업 종료일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일괄적용 사업주가 건설공사 또는 별목업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 공단에 사업의 기간을 신고한 경우에는 사업 종료일의 다음 날에 제1항에 따른 일괄적용 사업 종료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영 제9조에 따른 사항 중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름, 사업의 명칭(상호, 법인(단체)명)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신고 하려는 사업주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사업자 등록사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고한 날에 제1항에 따른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4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고용보험가입신청서”를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별지 제4호서식의 보험관계”를 “별지 제61호의3서식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또는 농·어업경영체 등

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하고, 같은 서식 중 “(대표자 또는 경영주)”를 “(대표자)”로 하며, 같은 서식 중 “확인사항의 행정정보를”을 “확인사항 중 휴업·폐업사실 증명원을”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제1호 또는 제2호의”를 “관련”으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제1호 중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가”를 “사업장이”로 하고, 같은 뒤쪽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뒤쪽 제3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호(종전의 제3호) 중 “신청인이 법인”을 “법인”으로 한다.

별지 제5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5호의3서식 제2항 중 “월보수액 및 피보험자격”을 “피보험자”로 하고, 같은 서식 제3항 중 “징수사무”를 “보험료 납부”로 하며, 같은 서식 제1호 중 “징수사무”를 “보험료 납부”로 하고, 같은 서식 제3호 중 “징수사무”를 “보험료 납부”로 한다.

별지 제61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관계의 성립·소멸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5항제8호부터 제10호, 제7조제8항제1호 및 제2호, 제8조제2항,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신청·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산재보험토털서비스(total.comwel.or.kr) [별지 제2호의2서식] 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예수인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	----

예수인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사업장 형태	[]법인 []개인
		소재지	우편번호()			
		우편물 수령지	우편번호()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팩스번호	
		업태	종목	(주생산품)		업종코드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금급(반환) 계약 사전신고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 보험료 정산 등 환급(반환)금액 발생 시 지급될 계좌입니다. (지급 관련하여 통장사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8항 제3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 (신청 시 괄호에 “√” 표시를 합니다)	
보험사무 대행기관	명칭	번호

고용보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수		노무제공자 직종	성립일	
	피보험자 수				
	주된 사업장	명 칭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비해당	사업자등록번호 관리번호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수		노무제공자 직종	성립일	사업종류코드
	사업의 형태		[] 계속 []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사업기간: -)		
	성립신고일 현재 산업재해발생 여부		[] 있음 [] 없음		
	주된 사업장 여부		[]해당 []비해당	주된 사업장관리번호	
	원사업주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사업개시번호 (사내하도급 수급사업주인 경우만 적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8조의2제8항제1호·제48조의3 제8항제1호·제48조의6제1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담당직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신고인이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말합니다)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합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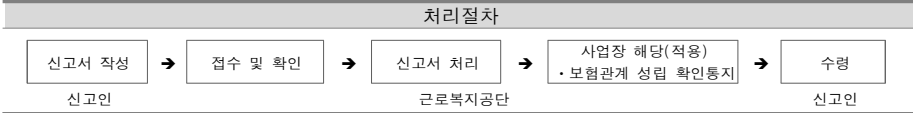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직원 확인 사항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공동 사항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종사하는 사업(장)의 보험관계 성립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 서식을 이용하며, 하나의 사업(장)에 예술인·노무제공자와 근로자가 함께 종사하는 경우 근로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을 이용하여 보험관계 성립을 별도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사용자·대표자”란은 개인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주,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2. “업태와 종속”란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와 종속을 적습니다. 3. “환급(반환)계약 사전신고”는 사업장 환급(반환)금 발생 시 지급받을 은행의 은행명, 계좌번호 등을 적습니다. * 고용·산재보험료의 자동 납부를 원하시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역본부·지사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 보험	1.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수” , “피보험자 수”란은 성립 또는 가입 사업 단위의 내용을 적습니다. 2. “노무제공자 직종”란은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노무제공자의 직종을 적습니다. 노무제공자 직종이 2 이상인 경우 모두 적습니다. 3. “우선지원 대상기업”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인지 여부를 적습니다. 4. “주된 사업장관리번호”란은 주된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이미 성립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5.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이 곤란한 경우 서류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원사업주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사업개시번호”란은 사내하도급 근로자 등을 고용하여 사내하도급을 수행하는 수급사업주가 원 사업주의 산재보험 사업장관리번호(원사업주가 일괄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사업주의 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건설업은 제외). 1. “노무제공자 수”란은 성립 또는 가입 사업 단위의 내용을 적습니다. 2. “노무제공자 직종”란은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노무제공자의 직종을 적습니다. 노무제공자 직종이 2 이상인 경우 모두 적습니다. 3. “사내하도급”이란 원사업주로부터 업무를 도급받거나 업무의 처리를 위탁한 사업주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원사업주 의 사업장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수급사업주”란 업무를 도급받거나 업무의 처리를 위탁받은 사업주를 말합니다. 5. “원사업주”란 업무를 도급하거나 업무의 처리를 위탁한 사업주를 말합니다.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최 상위의 원사업주를 말합니다. 6. “사내하도급 근로자 등”이란 수급사업주가 원사업주로부터 도급받거나 위탁 받은 일을 완성하거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고 용한 근로자나 노무제공자를 말합니다. 7. 원사업주가 다수 있는 경우에는 사내하도급 근로자 등이 가장 많은 사업장의 원사업주 원수급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8.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 여부 확인이 어려우면 관련 서류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원사업주는 수급사업주에게 사업장관 리번호 제공에 협조해야 합니다).
산재 보험		1. “노무제공자 수”란은 성립 또는 가입 사업 단위의 내용을 적습니다. 2. “노무제공자 직종”란은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노무제공자의 직종을 적습니다. 노무제공자 직종이 2 이상인 경우 모두 적습니다. 3. “사내하도급”이란 원사업주로부터 업무를 도급받거나 업무의 처리를 위탁한 사업주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원사업주 의 사업장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수급사업주”란 업무를 도급받거나 업무의 처리를 위탁받은 사업주를 말합니다. 5. “원사업주”란 업무를 도급하거나 업무의 처리를 위탁한 사업주를 말합니다.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최 상위의 원사업주를 말합니다. 6. “사내하도급 근로자 등”이란 수급사업주가 원사업주로부터 도급받거나 위탁 받은 일을 완성하거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고 용한 근로자나 노무제공자를 말합니다. 7. 원사업주가 다수 있는 경우에는 사내하도급 근로자 등이 가장 많은 사업장의 원사업주 원수급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8.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 여부 확인이 어려우면 관련 서류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원사업주는 수급사업주에게 사업장관 리번호 제공에 협조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료 지원 안내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금은 아래의 사업규모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에게 지원 합니다. 다만,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에 대한 지원금은 사업규모 요건과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가.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이거나,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 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연속하여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나.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다. 지원이 시작된 이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 되지 않을 것 *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 되는 경우 4개월째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고용보험료 지원은 고용보험의 자격취득이 된 사람으로 한정하여 이루어지므로 현재까지 자격취득이 안 된 피보험자의 경우 반드시 근로복지공단에 자격취득신고서(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해 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신고관련 문의: 국번없이 1588-0075). * 노무제공자의 경우 기한 내에 월 보수액을 신고한 달만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합니다.
-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 월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지원되며 매월 해당 월의 보험료가 납부기한 이 내에 모두 납부된 경우에만 보험료가 지원됩니다. 따라서 납부기한이 지나서 납부하거나 일부만 납부한 월에는 지원을 받 을 수 없습니다.
- 고용보험료는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보수액 수준 등에 따라 사업주와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의 일부가 지원됩니다. 다만, 노무제공자의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이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근 로복지공단은 해당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재산 및 종합소득자료를 수집하여 확인합니다.
- 고용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에 신규로 자격을 취득한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있을 경우 고용보험료 지원신 청이 없어도 해당 가입자가 보험료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신고하는 노무제공자와 해당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의 경우에는 별지 제 31호의3 서식을 통한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한 경우에만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사실이 추후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한 금액에 대해 환수할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 결과를 통보합니다.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보험사무 대행기관	명칭			인가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신청명세

①총신청액	②보험료 납부 지원금	③피보험자 관리 지원금	④사업장 가입 지원금
원	원	원	원

보험료 납부 지원금 신청 명세		산정 명세		금액	
				원	
피보험자 관리 지원금 신청 명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등	산정 명세		금액	
		계		원	
		()분기			
	()분기				
	보수충액신고			원	
		계		원	
사업장 가입 지원금 신청 명세		산정 명세		금액	
				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보험사무대행기관(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첨부서류	별지 제49호서식의 사업장별 피보험자사무 처리장부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절지(80g/㎡)]

자영업자 고용보험(소멸신고서, 해지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우편번호()				
	환급(반환) 계좌 사전신고	은행명	계좌번호		
대표자 (경영주)	예금주명	* 보험료 정산 등 환급(반환)금액 발생 시 지급될 계좌입니다. (지급 관련하여 통장사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유선/휴대전화)	
	주소 우편번호()				
보험사무 대행기관	명칭			번호	

신고(신청) 사유	소멸	[]폐업(농어업경영체탈소) []대표자 변경(해임) []피보험자격 이종취득			
	해지	[]해지사유()			

사유 발생일자

해지(소멸) 후 우편물 수령지
우편번호()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관계	소멸일
----------------	-----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청인(가입자)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절지(80g/㎡)]

신·구조문대비표

담당직원 확인사항	1. 폐업사실 증명원 또는 농어업경영체 등록말소확인서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직원 확인사항란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자영업자 보험관계를 해지(소멸)하려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해지신청서(소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경우 연도 중 해지가 가능합니다. 3. 사업자등록(또는 고유번호) 폐업, 농어업경영체등록 말소 시 폐업일의 다음날이 소멸일이 됩니다. 4.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공단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날이 소멸일이 됩니다. 5. 공단이 사업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멸을 결정 통지한 날의 다음 날로 보험관계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6. 보험가입 해지 또는 보험료 체납으로 보험관계가 소멸되거나, 수급자격 미충족으로 실업급여 수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작성방법
1. "환급(반환)계좌 사전신고"란에는 사업장 환급(반환)금 발생 시 지급 받을 은행의 은행명, 계좌번호 등을 적습니다. 2. "신고(신청) 사유"란에는 해당 사유 한 가지만 표시한 후 사유 발생일을 적습니다. 3. 신고인(신청인)의 경우 반드시 대표자(경영주)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신청서) 제출 → 접수 및 확인 → 신고서(신청서) 처리 → 사업장 탈퇴 (보험관계 소멸·해지) 확인 통지 → 수령 신고인(신청인) 근로복지공단 신고인(신청인)

현행	개정안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소멸신고) ① ~ ④ (생략)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려는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거나 신고·신청한 날에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또는 일괄적용 성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소멸신고)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 ----- ----- -----
1. ~ 7. (생략) <u><신 설></u>	1. ~ 7. (현행과 같음) 8.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 등록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u><신 설></u>	9.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를 신고하여 수리된 경우
<u><신 설></u>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실행 신고 또는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⑥·⑦ (생략) <신설>	등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⑥·⑦ (현행과 같음) ⑧ 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보험관계 소멸신고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에 제3항에 따른 보험관계 소멸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사업자가 폐업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그 폐업일 2. 건설공사 또는 별목업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 공단에 사업의 기간을 신고한 경우 그 사업 종료일		제10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① · ② (생략) <신설>	로 본다. 제10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영 제9조에 따른 사항 중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름, 사업의 명칭(상호, 법인(단체)명)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신고 하려는 사업주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사업자 등록사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고한 날에 제1항에 따른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8조(일괄적용사업의 사업 개시·종료 신고 등) (생략) <신설>	제8조(일괄적용사업의 사업 개시·종료 신고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일괄적용 사업주가 건설공사 또는 별목업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 공단에 사업의 기간을 신고한 경우에는 사업 종료일의 다음 날에 제1항에 따른 일괄적용 사업 종료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제44조의2(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 등) ① 법 제49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자영업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제44조의2(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 등) ① ----- ----- ----- -----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 ----- ----- ----- ----- -----

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1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말하고,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 5. (생략) ② ~ ④ (생략) ⑤ 법 제49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u>별지 제4호서식의 보험관계</u> 해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 3. (생략)	----- ----- ----- ----- ----- -----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u>별지 제61호의3서식의 자영업자 고용보험</u>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	--